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2. 8 선고 2020가단35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한창훈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변론 종결2022. 12. 21.

판결 선고2023. 2.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903,298원 및 그 중 13,664,080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1) 피고들 사이에 2020. 1. 20. 체결된 각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 1. 20. 접수 제13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1) 피고들 사이에 2020. 5. 1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 5. 18. 접수 제1062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9.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대출은행 C은행 남원시지부, 보증금액 18,000,000원, 보증비율 90%)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대출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면 피고 A은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 완료일까지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구상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8. 11. 21.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9%, 2022. 1.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신용사고 발생일자 2020. 8. 11., 원고에게 통지일자 2020. 9. 4.), 원고는 2020. 11. 26. C은행 남원시지부에 피고 A을 대위하여 그 대출금 13,664,0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보전처분 등 절차비용을 지출하여 그 잔액 239,218원을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A은 2019. 4. 25.(10,000,000원), 2019. 10. 11.(15,000,000원) 및 2020. 1.

20.(10,000,000원1) 3회에 걸쳐 피고 B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들은 2020. 1. 20.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이 위

35,000,000원 및 이자를 2020. 6. 20.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를 대물변제로서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 1. 20. 접수 제1382호로 각 소유권이전담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담보등기'라 한다).

라. 피고 A은 2020. 5. 18. 피고 B로부터 30,000,000원을 재차 차용하였다.

피고들은 2020. 5. 18. 위 차용금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B 앞으로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 5. 18. 접수 제1062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이 부분 청구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1. 가.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및 2020. 8.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0. 11. 26. 그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이 대출 이자를 연체한 시점은 2020. 8. 7.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근접하였던 점, 피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B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할 정도의 신용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시가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D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인 2020. 1. 20. 기준

1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	5,678,400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일부	13,585,6782)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2022.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5쪽 참조)
2	별지 목록 제2번 부동산	14,525,600	E조합(주천) 대출금	25,000,000
3	별지 목록 제3번 부동산	26,289,200	F조합 대출금	3,327,000
4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3,270,000	G 대출금	7,046,000
5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1,000,0003) 원고는 위 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2006년식이 194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05년식인 위 자동차를 전혀 가치가 없다고 봄은 타당하지 않고, 다만 2023. 1. 27.자 피고 제출 참고서면서에 피고가 위 가액이 1,000,000원 이상에는 달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가액으로 사실인정한다(설령 가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1 다.항 기재)	35,000,000
6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승용차	6,880,000		
합계	57,643,200		83,958,678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20. 5. 18. 기준

1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	5,745,600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일부	13,585,678
2	별지 목록 제2번 부동산	14,686,400	E조합(주천) 대출금	25,000,000
3	별지 목록 제3번 부동산	26,472,400	F조합 대출금	3,105,000
4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3,270,000	G 대출금	6,253,000
5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1,000,000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1 다.항 기재)	65,000,000
6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승용차	6,880,000	H카드에 대한 채무	10,962,0004) 2020. 2. 17.자 발생 채무 10,662,000원 + 2020. 2. 10.자 발생 채무 300,000원(갑 제7호증 제8, 9쪽 참조)
합계	58,054,400		123,905,678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에 따라 마쳐진 각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원물반환).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A과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금전을 차용해준 관계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등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 A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바 없었고, 앞서 본 금전 대여 이전까지는 피고 A과 어떠한 금전거래 관계도 없었으며, 피고 A은 위 대여 당시까지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목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피고 B가 선의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① 피고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1984. 6.경 의정부시 I에 거주할 당시부터 같은 업종(목기 제조가공업 등)에 종사하던 피고 A 부부를 알게 되어 1999년경 피고 A이 목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남원에 이사하여 피고 A의 도움을 받아 목기칠가공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들 사이의 인적 관계가 결코 피상적인 관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바도 있기까지 하다(남원시 J, 피고 A 2020. 10. 13. 전출, 피고 B 2020. 10. 8. 전입).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의 목기 공장이 부도가 나 운영이 중단되어 땅과 건물을 놀리고 있어, 앞서 본 대여금 채권의 이자 대신 피고 B가 숙식이 가능한 위 공장에서 목기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전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도의 부탁이 가능한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는 매우 긴밀하다고 할 것이다.

③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피고 B 99%, 피고 A 1%)를 2021. 3. 11.에,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피고 B 90%, 피고 A 10%)를 2020. 10. 12. 취득하면서 각 공동소유권 등록을 마치기까지 하였는바 사해행위 이후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드모데

별지

1) 차용증 작성일자 및 피고 A에의 입금 일자는 2020. 1. 21.이나, 위 소비대차를 위하여 피고 A이 작성한 차용증(을 제4호증의 3)에는 '이자는 설정으로 대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기재가 있고,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을 위하여 작성된 대물반환예약서(을 제3호증) 또한 이 부분 차용금 1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실, 피고 B 또한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물반환예약이 체결된 것임을 자인하는 점(2021. 2. 2.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

제3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차용금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차용일자를 2020. 1. 20.로 보고 사해행위 판단을 위한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2022.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5쪽 참조)

3) 원고는 위 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2006년식이 194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05년식인 위 자동차를 전혀 가치가 없다고 봄은 타당하지 않고, 다만 2023. 1. 27.자 피고 제출 참고서면서에 피고가 위 가액이 1,000,000원 이상에는 달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가액으로 사실인정한다(설령 가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2020. 2. 17.자 발생 채무 10,662,000원 + 2020. 2. 10.자 발생 채무 300,000원(갑 제7호증 제8, 9쪽 참조)